

학생지도위원회 규정

제정 1993. 3. 10. 전문개정 2013. 3. 1.
개정 2013. 7. 1. 개정 2014. 3. 1.
개정 2016. 12. 23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경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재학생의 건전한 학생활동과 조화로운 인격향상을 도모하고 바람직한 대학생활을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본 대학의 학생지도, 학생복지, 학생 교과외 활동 지원, 동아리 및 연구회, 학보사 및 방송국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16.12.23.>

1. 위원회는 교학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,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4.3.1., 2016.12.23.>
2.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교학처(학생팀) 직원으로 한다. <개정 2014.3.1.>

제3조(임기)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,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<개정 2016.12.23.>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대학의 면학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
2. 학생자치활동 지도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
3. 지도교수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제반 사항
4. 학생상벌 및 기타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
5. 삭제 <2016.12.23.>
6. 삭제 <2016.12.23.>
7. 삭제 <2016.12.23.>
8. 삭제 <2016.12.23.>
9. 학보사·방송국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
10. 학보사·방송국의 정책 및 제반운영에 관한 사항
11. 동아리 승인 및 취소 지원금분류에 관한 사항
12. 학생 교과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<개정 2016.12.23.>
13. 기타 관련사항

제5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7.1.>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3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